

1. 개정이유

공동산림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계획 협의기관을 추가로 지정하고, 공유림등 매수 시 매수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매수방법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며, 그 동안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공동산림사업 사업계획 협의기관 추가 지정(안 제16조제1항)

「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개정으로 공동산림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되는 국립수목원장, 산림항공본부장,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및 국립산림과학원장도 소관 국유림에서 추진되는 공동산림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협의할 수 있도록 개정

나. 공유림등의 매수 시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는 규정 마련
(안 제19조 제4항 및 제5항 신설, 안 제19조의2 제1항, 안 제19조의2 제7항 신설)

- 1) 공유림등의 매수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, 공유림등의 매수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는 대상, 절차 등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
- 2) 공유림등의 매수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토지가격과 입목가격을 각각 구분하여 평가하도록 규정
- 3) 공유림등의 매수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의 지급액 산정기준 등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신설

다. 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 개정에 따라 “감정평가업자”를 “감정평가법인등”으로 용어 현행화(안 제19조의2 제2항, 제3항 및 제5항)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공유림등의 매수대금을 분할지급하는 사업은 2021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임

다. 합 의 : 관계부처 의견조회 예정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2) 입법예고 : 예정

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1항 전단 중 “지방산림청장”을 “지방산림청장, 국립수목원장, 산림항공본부장,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및 국립산림과학원장”으로 한다.

제19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공유림등의 매수대금 지급은 일시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.

⑤공유림등의 매수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는 대상,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한다.

제19조의2제1항제1호 단서 중 “단서의”를 “단서에 해당하거나 매수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를”을 “소유자가 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(이하 “감정평가법인등”이라 한다)을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제1호 본문 중 “감정평가업자”를 “감정평가법인등”으로 하고, 같은 호 단서 중 “감정평가업자가”를 “감정평가법인등이”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감정평가업자”를 “감정평가법인등”으로 하고, 같

은 조 제5항 중 “감정평가업자를”을 “감정평가법인등을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제19조에 따라 매수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의 지급액 산정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한다.

별지 제5호서식 중 “감정평가업자”를 “감정평가법인등”으로 하고, 같은 서식 나목 중 “감정평가업자”를 “감정평가법인등”으로 한다.

별지 제7호서식 앞쪽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(앞쪽)

매매대금						
계약보증금						
매매토지	소재지	지번	지목	공부면적 (㎡)	매매면적 (㎡)	비고

위 토지에 대하여 매수인과 매도인이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며, 매수인과 매도인은 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서를 2부 작성하고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.

년 월 일

매 수 인 인

수 탁 자 인

매 도 인

주 소

성 명

(서명 또는 인)

첨부서류	1. 매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. 위치도(축척 2만5천분의 1 지형도에 매수예정지의 경계와 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) 또는 위성위치확인 시스템(GPS)를 이용한 수치지도면 1부
------	---

작성요령

1. 수탁자는 매수인이 매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.
2. 분할하여 매수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따로 정하는 “지급 약정서”에 따른다.

별지 제8호서식 중 “<○○업자>”를 각각 “<○○법인등>”로 하고, 같은 서식 중 “감정평가업자”를 “감정평가법인등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6조(공동산림사업의 협의 등) ①공동산림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<u>지방 산림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</u>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도 또한 같다.	제16조(공동산림사업의 협의 등) ① ----- ----- <u>지방 산림청장, 국립수목원장, 산림 항공본부장, 국립산림품종관리 센터장 및 국립산림과학원장</u> ----- -----.
② ~ ④ (생 략) 제19조(매수의 방법 등) ① ~ ③ (생 략) <u><신 설></u>	② ~ ④ (현행과 같음) 제19조(매수의 방법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<u>④공유림등의 매수대금 지급은 일시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 급할 수 있다.</u>
<u><신 설></u>	<u>⑤공유림등의 매수대금을 분할 하여 지급할 수 있는 대상,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한다.</u>
제19조의2(매수를 위한 감정평가 의 기준 등) ① 영 제13조제1항 에 따라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다. 1. 토지가격과 입목가격을 구분 하지 아니할 것. 다만, 제19조	제19조의2(매수를 위한 감정평가 의 기준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 1. ----- -----.

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토지
가격과 입목가격을 각각 구분
하여 평가하여야 한다.

2. 3. (생략)

②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유
림등의 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
를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제19조
제1항의 매도승낙서를 제출한
날부터 15일 이내에 추천하여야
한다.

③ 영 제13조제4항에 따라 재평
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
의 기준에 따른다.

1. 최초 감정평가업자에게 재평
가를 요구하는 경우: 영 제13
조제4항제1호. 다만, 해당 감
정평가업자가 금품을 수수하
거나 감정평가의 공정성을 기
대하기가 현저히 어려운 경우
에는 제2호에 따른다.

2. 다른 감정평가업자에게 재평
가를 의뢰하는 경우: 영 제13
조제4항제2호 및 제3호

④ (생략)

⑤ 공유림등의 소유자는 제4항

--- 단서에 해당하거나 매수
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---
-----.

2. 3.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---- 소유자가 「감정평가 및
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 제2
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
등(이하 “감정평가법인등”이라
한다)을 -----
---.

③ -----

-----.

1. --- 감정평가법인등-----

----- 감정
평가법인등이 -----

-----.

2. --- 감정평가법인등-----

④ (현행과 같음)

⑤ -----

에 따른 통지(제3항제2호만 해당한다)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다.

⑥ (생략)

<신설>

----- 감정평가법
인등을 -----.

⑥ (현행과 같음)

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제19조에 따라 매수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의 지급액 산정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한다.